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5

# 서 울 행 정 법 원

## 제 2 부

## 판 결

사 건 2019구합90722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redacted]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20. 8. 20.

판 결 선 고 2020. 9.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5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21.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72호)된 [redacted]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위례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그 사업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국방부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중 [redacted]구 내에 있는 국가 소유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양여받아 이를 취득한 다음, 2014. 8. 19.부터 2017. 6. 14.까지 피고에게 토지분 17건, 건물분 3건에 대하여 취득세 32,773,807,930원, 지방교육세 3,277,380,720원, 농어촌특별세 1,088,459,750원 등(이하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통틀어 '취득세 등'이라 한다) 합계 37,139,648,4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1. 피고에게, 위 토지 중 209,9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국방부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에 관한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 취득세 등 과세구분 | 신고납부세액(원) | 정당세액(원) | 경정청구세액(원) |
|---|---|---|---|
| 토지분(17건) | 35,504,813,040 | 30,666,906,400 | 4,837,906,640 |
| 건물분(3건) | 1,634,835,360 | 1,401,171,470 | 233,663,890 |

라. 피고는 2018. 3. 23. 이 사건 경정청구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여 토지분 취득세 등 합계 35,504,813,040원을 30,666,906,4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기부채납용 건축물 신축 및 토지조성을 위해 멸실될 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5

축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18. 8. 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9.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문언이나 취지상 비과세대상이 국가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되는 당해 부동산에 한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가 오로지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점,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및 철거가 필수적인 점, 건물이 철거되면 해당 부지의 가치가 상승하므로 그 철거비용이 해당 부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바,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일체로 기부채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가 국가의 편의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조세정의에도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5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국방 · 군사시설부지 및 시설물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사이에 체결된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간의 위례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군 시설 이전사업 협력을 위한 기본협약'이 2012. 10. 15. 최종 수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대상시설"이라 함은 위례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이전 또는 용도폐지되는 토지·건물 등 기존 국방·군사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나. 제8248부대 아. 남성대 CC
자. 남성대 퍼블릭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차. 쌍둥이 골프연습장
카. [redacted]학사 <기타 생략>
2. "대체시설"이라 함은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용도에 대체되는 토지 및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주거복지시설"이라 함은 사업지구 내 복지시설부지 또는 양 부처가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에 설치할 군 아파트 및 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4. "예하부대 등"이라 함은 사업지구 내 소재한 국방부의 소속기관 및 그 예하부대를 말한다.
제3조(대상사업) 이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서울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시 [redacted]동 및 [redacted]시 [redacted]동 일원 택지개발 본 단지(이하 "본 단지"라 한다) 사업
2.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을 위한 대체시설사업(인접 간선시설 포함)
3. 주거·복지시설건립사업(부지 포함)
4. 남성대 CC 및 퍼블릭 골프장의 대체시설 사업
제5조(이전대상시설의 이전 등)
① 국방부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제2조 제1호 각 목의 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을 인수한 후 이전대상시설을 이전하기로 한다.
제6조(대체시설사업 시행 등)
① 원고를 제3조의 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체시설사업을 자기비용으로 시행·준공한 후 이를 예하부대 등에 양도하도록 한다.
제7조(주거·복지시설의 배치)
② 국토해양부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국방부와 협의를 통하여 아래 각 호의 주거·복지시설을 위례신도시 내 또는 양 부처가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에 설치 및 제공하도록 한다.
2. 군자녀 기숙사(600실) 5. 군아파트(5,000세대 부지, 1,500세대 건축) <기타 생략>
제8조(대체골프장 제공 및 국방부 사업지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5

① 국토해양부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남성대 골프장과 퍼블릭 골프장을 양여받는 조건으로 국방부와 사전협의하여 수도권지역에 18홀 규모의 대체골프장 1개소를 매입하여 제공하게 하고, 국방부가 지정하는 지역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여 제공하게 한다.

제9조(비용부담 및 재산처분)

① 국토해양부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자기비용으로 제3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대상사업을 시행하고, 추후 본 단지 사업비에 이를 계상하도록 한다.

② 토지, 건물 등 이전대상시설 및 대체시설의 처분은 국유재산법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한 기부 및 양여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국무총리실 조정(2011. 6. 22.) 및 '위례신도시 군시설 기부·양여방안 관계차관회의 결과'(2011. 11. 4.)에 따른다.

2) 원고는 위 기본협약에 따라 국방시설본부 [redacted]지역 군부대이전사업단장과 사이에, 남성대 골프장(퍼블릭 골프장 포함) 이전사업에 대하여는 2016. 8. 3., 국군 제8248부대 이전사업(과천, 김포)에 대하여는 2016. 11. 29., 특수전사령부/제3공수특전여단 이전사업(병영시설)에 대하여는 2016. 12. 20. 각 최종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성대 골프장 이전사업]

제4조(협의사항)

① 기부 대상재산 및 양여 대상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재산(토지: 133필지/1,996,611.4㎡, 건물: 47동/20,000.56㎡, 공작물: 72식, 입목죽: 124,470주)
2. 양여재산(토지: 46필지/237,490㎡, 건물: 29동/6,726.34㎡, 공작물: 395식, 입목죽: 26,860주)

③ 양여시기 및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대상 시설의 양여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원고의 대체시설을 국방부가 기부채납 받은 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④ 기부 및 양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고는 부지매입 후 완공된 대체시설을 원고의 명의로 등기하는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후 국방부에 기부한다.
2. 국방부는 원고가 기부한 재산을 채납한 후에 이전대상시설을 원고에 양여하되 용도폐지 등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국군 제8248부대 이전사업(과천, 김포)]

제4조(협의사항)

① 기부 대상재산 및 양여 대상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재산(토지: 7필지/109,095㎡, 건물: 49동/38,732.42㎡, 공작물: 70식, 입목죽: 38,970주)
2. 양여재산(토지: 71필지/185,597㎡, 건물: 51동/40,277㎡, 공작물: 292식, 입목죽: 4,551주)

③ 양여시기 및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5

1. 이전대상 시설의 양여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원고의 대체시설을 국방부가 기부채납 받은 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④ 기부 및 양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고는 부지매입 후 완공된 대체시설을 원고의 명의로 등기하는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후 국방부에 기부한다.
2. 국방부는 이 사건 기본협약 제7조 제2항의 위례신도시 내 주거·복지시설의 부지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기부서로 기부채납하고, 원고는 위례신도시 사업 준공 후 즉시 국방부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3. 국방부는 원고가 기부한 재산을 채납한 후에 이전대상시설을 원고에 양여하되 용도폐지 등이 필요하므로 그 방법은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특수전사령부/제3공수특전여단 이전사업]

제4조(협의사항)

① 기부 대상재산 및 양여 대상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재산(토지: 118필지/3,072,118.1㎡, 건물: 319동/231,748.8㎡, 공작물: 11,437식, 입목죽: 270,040주)
2. 양여재산(토지: 188필지/766,786㎡, 건물: 337동/124,805㎡, 공작물: 2,064식, 입목죽: 68,757주)

③ 양여시기 및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대상 시설의 양여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원고의 대체시설을 국방부가 기부채납 받은 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④ 기부 및 양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고는 부지매입 후 완공된 대체시설을 원고의 명의로 등기하는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후 국방부에 기부한다.
2. 국방부는 원고가 기부한 재산을 채납한 후에 이전대상시설을 원고에 양여하되 용도폐지 등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3. 국방부는 미군 공여재산에 대해 부대이전지역으로 이전 시 부대이전지역 내 기부재산 중 미군 측과 협의된 토지 및 건물을 미군 측에 선 공여하고, 기존 공여재산을 반환받아 원고에게 양여한다.

3) [redacted]본부장이 [redacted] 골프장 이전사업에 대하여는 2016. 9. 7.에, 국군 제8248부대 이전사업에 대하여는 2016. 12. 23.에, 특수전사령부/제3공수특전여단 이전사업에 대하여는 2016. 12. 29.에 각 양여를 승인하여,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주거·복지시설 등을 신축하였으며, 위 부지는 국가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5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이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날인 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신설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18.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의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두6977 판결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5

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지방세법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법상 별개의 물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되는 해당 부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므로, 이를 두고 국가가 직접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국가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 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건물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5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5

별지

#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① 제3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5

설치한 국방·군사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유지 또는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55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끝.